##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32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4.

발 의 자:이 용・김성원・서정숙

신원식 · 김형동 · 배현진

주호영 • 배준영 • 김승수

장제원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함)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은 없음.

그런데 「독서문화진흥법」,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등의 문화관 런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 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생활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1항 중 "수립"을 "5년마다 수립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	제6조(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
수립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	수립 등) ①
관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	
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	
한다)을 <u>수립</u> ·시행하여야 한	<u>5</u> 년마다 수립
다.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